

1. 의결주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법령상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이 불기소, 선고유예 등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량한 노래연습장업자의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래연습장업자의 행정처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출입시간 및 출입장소 제한 위반 시 1차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 관련 행정처분 면제 기준 추가(안 제15조제3항)

-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신설
-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신설

나. 청소년 출입시간 및 출입장소 제한 관련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2)

-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
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을 각
영업정지 10일에서 영업정지 7일로 단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생 략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

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제2호마목2)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위반란 중 “10일”을 “7일”로 하고, 같은 호 마목8)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위반란 중 “10일”을 “7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②(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u>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u> 를 받거나 <u>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u>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신설>	1. 노래연습장업자가 <u>청소년의</u>

<신 설>

<신 설>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
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
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
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
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
상정보, 진술 또는 그밖의 방
법으로 확인된 경우

3.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
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
다고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
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
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
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

<u><신 설></u> ④ (생 략)	<u>결을 받은 경우</u>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다.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처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바. 같은 위반행위로 4차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처분한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아.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나.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계속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다.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1) 투명유리창 및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2) 그 외의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6) 호객행위를 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폐쇄 영업정지 3월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바.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6호				
1)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한 때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2)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유통한 때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3)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4)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 반 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